

범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관세협상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의 수입증가효과분석

최 종 두*

The Effect of Import Increase for Korea's Fishery by Korea-GSTP Ground

Choi, Jong-Du*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실증분석결과 |
| II. 범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의 개요 | VI. 모델과 시나리오별 분석 |
| III. 한·GSTP 수산물교역 및 국내 어
종별 생산 | 참고문헌 |
| IV. 결론 및 정책함의 | Abstract |

I. 서론

현재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성장이라는 대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상품 수출 중심의 통상구조를 다변화·고도화하고, 개방으로 인한 국내 조정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통상국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과의 협상을 통하여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체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그리고 쌍무적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의 지역주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통상체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

접수 : 2008년 11월 12일 최종심사 : 2008년 12월 7일 게재확정 : 2008년 12월 10일

* 한국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02-6361-1913, gatorchoi@koreadu.ac.kr)

실앞에 2004년 6월 제11차 UNCTAD¹⁾ 총회에서 출범한 GSTP 제3라운드 협상이 시장접근 협상과 규범협상 진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GSTP 국가간의 협상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협상대상국간의 개방과 무역촉진을 통하여 상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산업의 경우 한국과 GSTP 상대국들 간의 상호 수출입량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협상결과는 각 대상국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GSTP 협상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국내에 보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GSTP 협상의 의미와 협상체결이 한국 수산분야의 수입증가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계량적)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II. 범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의 개요

1. GSTP의 의미

GSTP는 범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를 뜻하며, 개도국들이 집단적 자력의 입장에서 그들 상호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각 국가간의 무역, 생산 및 고용 증진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구체적으로 개도국간 상호 관세인하등을 통한 교역, 생산 및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UNCTAD 주관하의 무역 협정을 의미한다.

GSTP는 개도국상호간의 호혜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 즉 모든 품목을 그 협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협상에 관한 주요 내용은 'Ground rules' 라고 불리우는 협상기본원칙에 정리되어 있다. GSTP Ground rules는 1984년에 열린 협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작성되어 검토되고 있으며 다음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협상 메카니즘 확립(Mechanism for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이다. 이 규정은 협상을 위한 절차, 협상대상품목, 협상방식, 협상일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for the GSTP)이다. 어떤 상품이 GSTP협상에 따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 GSTP 협상참가국의 원산품이어야 하며, 이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제반내용 즉 정의, 부가가치통산, 포장의 취급문제 등이 언급되어

1) UNCTAD(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UN에서 1964년에 설립하였다.

있다.

셋째, 보장장치규정(Rules of safeguards for the GSTP)이다. GSTP협상참가국은 그 혜택을 받는 제품수입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국내생산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 등 중대한 경제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장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바 이 규정은 그 발동기간,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넷째, 협상된 양허의 확대(Rules for the extension of negotiated concessions)이다. 이는 GSTP협상이 이해될 경우 각 참가국간에 이루어진 양허를 모든 GSTP협상참가국에게 확대시행하는 문제를 다룬 규정이다.

다섯째, 최빈국특별대우(Procedures for the provisions of special treatment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이다. 이는 협상참가국중 최빈국에 대해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주기위한 규정이다.

여섯째, 장기계약협상절차(Procedures relation to the negotiation of long term contracts among interested participants in the GSTP)이다. 이는 협상참가국들 간의 특정품목 및 제품에 대한 장기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양허의 철회 또는 수정(Modification or withdrawal of concessions)이다. 이는 GSTP양허의 확대적용 후 어떤 참가국이 그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다.

여덟째, 신규가입절차(New entrants)이다. 이 규정은 현재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개도국이 GSTP에 가입하려 할 경우 그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GSTP 논의 동향

1979년 2월 77그룹각료회가 탄자니아에서 개최되었으며, GSTP체결을 결정하였다. 1986년 5월 제1라운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한국은 전체품목 29개 품목양허를 제시하였고 수산물만 양허품목이 없었다. 1988년 4월 제1라운드 협상이 종결되었고, 48개국의 협정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89년 4월 GSTP 발효가 44개국에서 비준되었으며, 1989년 5월에는 아국 비준서 기탁('89. 6 협정 발효)이 이루어졌다.

1994년 6월 제2라운드 협상이 개시되었고, 한국은 48개 양허품목에 대해 10% 특혜를 실시하였으며, 수산물은 양허품목에서 제외하였다. 협상결과는 "98의정서"로 승인되었으나 협상 미참여국 무임승차 문제로 비준시한(2000년 12월)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04년 12월까지 4차례나 연장하였으나, 결국 폐기되었다.

R/O 방식의 제1, 제2라운드는 특혜수준 및 경제적 효과가 저조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도국간 교역 증진을 위하여 제3라운드 협상이 2004년 6월 개시되었다. 2007년 2월에는 GSTP 제3라운드 협상 참가국을 37개국(< 표

1) 참고)으로 확정하여 무임승차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였다.

2008년 4월 12차 UNCTAD 총회 계기로 개최된 GSTP 각료회의에서 시장접근 주요 모델리티 범위(range)에 합의하여, 2008년 12월 1일에 GSTP 협상위원회 및 참가국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기존 합의 수준을 재언급하는 선에서 진행됨에 따라 내년에 협상이 본격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GSTP의 실현에 따라 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실제이익은 그 나라가 협상상대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양허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협상결과에 의해 도출되는 불균등한 이익분배를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가 GSTP의 협상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 GSTP 제3라운드 참가국과 ASEAN 회원국

구분	국가명
GSTP 제3라운드 참가국 (37개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방글라데시, 베닝, 칠레, 쿠바, 한국, 이집트, 기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북한, 스리랑카, 수단, 태국, 튀니지아, 베트남, 짐바브웨,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하이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르완다, 수리남, 우간다
ASEAN 회원국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Ⅲ. 한·GSTP 수산물 교역 및 국내 어종별생산

1.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GSTP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수출입되는 품목들은 신선, 냉장보다는 대부분 냉동의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국별 수입현황을 보면 2004~2006년 11월 동안 한국이 GSTP 협상대상국들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은 4억 7천 2백만 달러에 약 237,513톤이었다(〈표 2〉 참조). 이는 동기간 한국의 전체 수산물 수입액(23억 7천 8백만 달러) 중 약 20%를 차지하는 양이며, 중국(40%)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GSTP 국가의 대한국수입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베트남, 태국, 칠레, 인도네시아, 인디아 등에서 수입량이 많은 실정이다(〈표 3〉 참조).

또한, 동기간 동안 GSTP 협상대상국들에게 한국이 수출한 수산물은 7천 9십만 달러(78,275톤)였다(〈표 2〉 참조). 이는 한국의 전체 수산물 수출액(11억 5천백만 달러) 중 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주로 수출된 국가로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범개도국간特惠무역제도 관세협상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의 수입증가효과분석

〈표 2〉 대 GSTP 제3라운드 참가국별 수출입 현황(연평균)

참가국	수입			수출		
	물량 (kg)	금액 (US\$)	전체수입금액 대비(%)	물량 (kg)	금액 (US\$)	전체수출금액 대비(%)
소 계	237,512,669	472,134,511	19.85	78,275,174	70,910,070	6.16
베 트 남	74,095,289	164,067,403	6.90	7,373,701	4,746,935	0.41
태 국	37,566,908	120,190,832	5.05	54,854,336	50,922,258	4.42
칠 레	46,672,789	59,608,171	2.51	28,751	205,682	0.02
인 도 네 시 아	16,919,828	31,426,900	1.32	8,078,570	5,436,843	0.47
인 디 아	15,182,458	22,669,918	0.95	1,221,680	779,348	0.07
기 타	38,133,133	74,171,288	3.12	6,718,136	8,819,003	0.77

〈표 3〉 대 GSTP 제3라운드 참가국별 연도별 수입 현황

참가국	2004		2005		2006. 11	
	물량 (kg)	금액 (US\$)	물량 (kg)	금액 (US\$)	물량 (kg)	금액 (US\$)
총 계 (total)	229,686,620	412,813,710	242,938,946	471,715,528	239,912,442	531,874,295
전체수입 대비	17.93%	18.26%	19.34%	19.80%	19.16%	21.35%
베 트 남	72,382,464	143,523,577	74,766,869	163,642,016	75,136,535	185,036,616
태 국	34,043,458	106,521,381	40,628,476	124,162,705	38,028,789	129,888,409
칠 레	42,174,605	43,934,907	50,325,389	57,075,988	47,518,374	77,813,618
인 도 네 시 아	15,687,337	29,007,773	20,114,579	33,500,906	14,957,568	31,772,021
인 디 아	17,125,374	24,034,830	13,157,416	19,981,229	15,264,583	23,993,694
아 르 헨 티 나	6,145,171	9,569,822	8,056,783	14,636,005	12,624,838	21,055,741
파 키 스 탄	7,164,689	8,890,908	6,868,084	9,648,651	7,714,476	11,129,764
모 로 코	2,857,657	5,614,315	3,945,307	9,345,583	4,539,869	12,544,181
멕 시 코	11,963,980	10,359,736	7,917,127	6,663,863	8,389,839	7,046,888
말 레 이 시 아	6,818,319	8,797,297	5,280,425	8,616,531	3,470,873	6,506,544
기 니 아	5,827,081	6,731,446	4,088,391	4,604,450	4,989,748	5,584,841
브 라 질	2,612,824	4,526,711	2,864,922	5,598,078	2,165,187	4,436,977
미 안 마	1,212,988	4,597,857	1,094,328	5,218,283	944,731	4,429,428
우 루 과 이	2,845,145	3,346,021	2,961,644	4,420,856	3,222,815	4,784,901
튀 니 지	23,744	901,801	64,862	2,248,506	103,511	2,862,820
스 리 랑 카	301,239	1,045,651	273,734	950,586	272,149	955,779
방글라데시	282,049	690,715	183,991	381,614	88,158	264,765
모리타니아	110,400	197,848	190,869	320,331	224,861	782,156
이 란	43,271	92,185	96,842	266,298	171,706	553,603
마다카스카르	5,187	45,707	11,344	221,222	62,764	309,668
북 한	33,404	273,832	5,580	52,852	0	0
우 간 다	0	0	16,504	69,109	14,580	56,862
이 집 트	1,958	24,817	2,505	24,190	5,576	52,443
하 이 티	24,000	76,926	125	8,496	37	3,750
나 이 지 리 아	276	7,647	14,640	31,683	875	8,826
수 리 남	0	0	8,210	25,497	0	0

최종 두

〈표 4〉 대 GSTP 제3라운드 참가국별 연도별 수출 현황

참가국	2004		2005		2006. 11	
	물량 (kg)	금액 (US\$)	물량 (kg)	금액 (US\$)	물량 (kg)	금액 (US\$)
총 계 (total)	62,306,244	54,842,469	82,291,179	76,606,078	90,228,098	81,281,662
전체국가 대비	15.33%	4.29%	19.98%	6.42%	26.85%	8.27%
베 트 남	6,462,473	4,884,519	7,458,578	4,570,368	8,200,053	4,785,919
태 국	42,688,182	37,564,503	60,209,832	57,383,208	61,664,993	57,819,063
칠 레	50,352	111,816	35,901	505,231	0	0
인도네시아	6,487,442	4,337,413	8,595,308	5,869,465	9,152,960	6,103,650
인 디 아	1,629,708	930,194	1,224,031	828,878	811,300	578,973
아르헨티나	33,952	63,568	36,203	190,797	6,338	37,556
파 키 스 탄	0	0	15,540	16,427	0	0
모 로 코	0	0	158	2,921	0	0
멕시코	286,275	1,006,236	870,469	1,643,708	7,536,616	6,796,093
말레이시아	1,566,160	2,629,773	1,315,772	2,613,415	885,144	1,957,052
기 니 아	1,786,202	1,207,786	1,409,968	1,124,184	399,390	260,042
브 라 질	491,061	736,431	130,426	687,195	94,684	750,072
미 안 마	0	0	72,000	45,937	0	0
우 루 과 이	128,806	806,182	491,916	668,679	526,287	1,059,826
스 리 랑 카	162,065	139,512	54,233	66,960	128,304	182,364
방글라데시	1,600	796	680	3,288	15,180	16,390
이 란	109,000	82,637	293,500	233,172	676,082	698,646
마다카스카르	18,000	9,927	36,000	19,620	36,000	19,620
이 집 트	62,138	128,198	20,044	42,278	57,680	88,666
나 이지 리 아	325,620	155,598	500	318	3,285	53,576
수 리 남	3,024	11,615	1,440	7,112	19,152	18,091
파 라 과 이	14,184	35,765	18,680	82,917	14,650	56,063

2.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품목별 수입현황을 보면 2004~2006년 11월 동안 한국이 GSTP 협상대상국들로부터 수입한 수산물 품목중 '새우와 보리새우(냉동)'이 가장 높은 수입액(6천 9백만 달러)을 차지하였으며, '어류유지와 분획물'이 2백 2십만 달러로 가장 낮은 수입액을 보이고 있다(〈표 5〉 참조). 특히, 상위 10위까지의 수입품목을 보면 새우류, 오징어류, 연체동물, 게, 갈치, 명태 등 한국의 주요 생산어종과 중복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기간 동안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GSTP 협상대상국들에게 수출한 수산물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보이는 품목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냉동)'으로 2천 3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기타어류(조제·저장)'은 2십만 달러로 가장 낮은 수출액을 보였다(〈표 5참조).

범개도국간特惠무역제도 관세협상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의 수입증가효과분석

〈표 5〉 대 GSTP 제3라운드 참가국 품목별 수출입 현황

품목	수입(2004-2006.11)			품목	수출(2004-2006.11)		
	물량(kg)	금액(US\$)	수입금액 누계(%)		물량(kg)	금액(US\$)	수출금액 누계(%)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1,561,701	69,362,522	14.69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냉동)	30,252,880	23,624,280	33.32
갈치, 조기, 민어 등 기타 어류(냉동)	45,834,153	68,863,362	29.28	어류 및 기타 갑각류 등의 분, 조분, 펠리트	22,686,068	13,519,081	52.38
명태 및 기타 냉동어육	45,507,526	49,584,061	39.78	황다랑어(냉동)	9,164,127	10,577,336	67.30
갑오징어 및 오징어 (냉동, 염수장, 건조)	10,916,831	41,393,000	48.55	명태, 갈치, 민어 등 기타 어류(냉동)	3,246,237	4,739,181	73.98
기타 연체동물	19,488,574	37,031,707	56.39	날개다랑어· 긴지느러미 다랑어(냉동)	1,885,622	4,063,719	79.71
기타 어류 (조제 및 저장 처리한 것)	8,834,288	30,071,746	62.76	갑오징어 및 오징어 (냉동, 염수장, 건조)	2,327,051	2,771,024	83.62
어류 및 기타 갑각류 등의 분, 조분, 펠리트	32,152,281	27,695,536	68.62	해조류 등 (냉장, 냉동, 염장)	166,588	1,539,588	85.79
새우와 보리새우(산것, 신선, 냉장, 건조, 염장)	7,674,843	24,350,113	73.78	고등어(냉동)	1,293,786	1,141,026	87.40
새우, 보리새우(밀폐, 조제 및 저장, 훈제, 브레드 등)	2,870,217	20,829,348	78.19	상어 및 기타 어류 간유, 분획물	1,530,544	1,064,847	88.90
게살, 왕게 등 기타게(냉동)	6,571,890	17,478,425	81.90	브라인슈림프, 웨이스트, 사체 등	1,924,226	1,013,064	90.33
조개류(조제 및 저장)	7,722,132	14,255,525	84.92	김 및 기타 해조류(조제)	144,187	998,567	91.74
정어리(냉동)	5,812,786	12,742,142	87.61	눈다랑어(냉동)	978,482	957,385	93.09
기타 어류 피레트(냉동)	2,339,761	11,320,379	90.01	굴(산것, 신선, 냉장, 염장, 염수장, 건조, 냉동)	115,200	943,629	94.42
해조류 등 (냉장, 냉동, 염장)	7,300,278	9,018,905	91.92	조개류(조제·저장)	130,514	648,573	95.33
조개류(냉동)	5,231,130	8,823,377	93.79	기타 다랑어(냉동)	902,956	634,826	96.23
대서양·다뉴브연어(냉동)	1,801,330	8,242,590	95.54	대구(냉동)	138,669	365,820	96.74
멸치, 조기, 까나리 등 기타 건조 어류	2,190,090	5,189,578	96.64	어류유지 및 분획물	473,920	330,210	97.21
절어린 및 다랑어류 (기름잡은 것, 보일드 한 것)	1,383,524	4,004,522	97.48	어류 및 기타 갑각류의 엑스, 즙	178,787	236,064	97.54
어류유지 및 분획물	2,880,055	2,221,264	97.95	기타어류(조제·저장)	107,074	201,567	97.83

3. 국내 어종별 생산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STP 협상대상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 중 일부는 한국의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등에서 어획하는 어종과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GSTP 협상으로 인한 관세감축은 한국의 어종별 생산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6년 11월 까지 한국의 일반해면어업에서 가장 많은 생산액을 나타내는 어종은 오징어류로 연평균생산액이 399,252백만원에 해당되며, 그 다음으로는 멸치류, 갈치, 고등어류, 낙지, 가자미류, 봉장어 순이었다 (< 표 6 > 참조). 특히, 생산액 순위 7위까지의 매출액이 일반해면어업 생산금액의 50.59%를 차지함으로써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6 > 국내 일반해면어업 어종별 생산금액 및 비중

생산금액 순위	어 종	연평균생산금액(천원)	비율(%)	누적비율(%)
1	오징어류	399,252,943	14.85%	14.85%
2	멸치류	243,118,000	9.04%	23.89%
3	갈치	206,084,762	7.66%	31.55%
4	고등어류	183,018,278	6.81%	38.36%
5	낙지	119,428,397	4.44%	42.80%
6	가자미류	112,320,792	4.18%	46.98%
7	봉장어	97,105,736	3.61%	50.59%

천해양식어업에서는 넙치류가 연평균 381,152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생산액을 보였으며, 조피볼락, 김, 굴류를 합한 생산금액이 천해양식어업 전체에서 66.36%를 차지하였다(< 표 7 > 참조). 양식어업의 경우, 일부 활어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률이 클 경우, GSTP 협상대상국에 따라서 국내 양식어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표 7 > 국내 천해양식어업 어종별 생산금액 및 비중

생산금액 순위	어 종	연평균생산금액(천원)	비율(%)	누적비율(%)
1	넙치류	381,151,508	28.85%	28.85%
2	조피볼락	186,678,144	14.13%	42.98%
3	김	184,011,260	13.93%	56.90%
4	굴류	124,997,873	9.46%	66.36%

원양어업은 다른 어업에 비해 비교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GSTP 협상대상국의 관세감축규모에 따라서 관련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의 원양어업에서는 가다랑어가 연평균 164,993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생산액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랑어류(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가 전체 원양어업의 49.3%(401,403백만원)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오징어류, 민어류, 기타어류 등이 차지하였다(< 표 8 > 참조).

범개도국간特惠무역제도 관세협상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의 수입증가효과분석

〈표 8〉 국내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금액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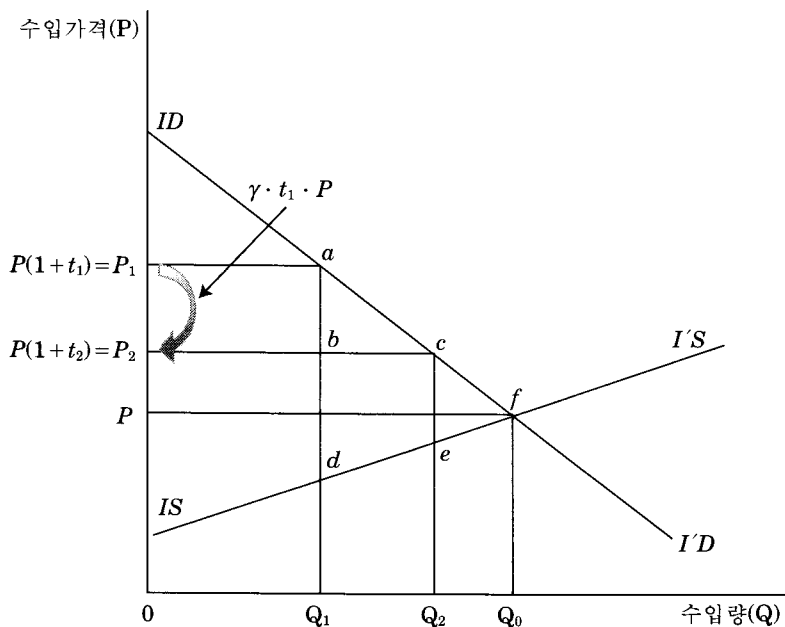
생산금액 순위	어 종	연평균생산금액(천원)	비율(%)	누적비율(%)
1	가다랑어	164,993,850	20.26%	20.26%
2	눈다랑어	155,729,288	19.13%	39.39%
3	오징어류	122,913,062	15.10%	54.49%
4	황다랑어	80,679,558	9.91%	64.40%
5	민어류	72,741,199	8.93%	73.33%
6	기타어류	32,643,125	4.01%	77.34%

Ⅳ. 모델과 시나리오별 분석

1. 관세협상모델과 자료

1) 관세협상모델

관세협상을 통한 관세율인하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수입수요곡선(import demand curve)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²⁾.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

2) William R.Cline et al, Trade Negotiations in the Tokyo Round; A Quantitative Assessment(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8)

〈그림 1〉에서 직선 $IDI'D'$ 은 한 국가의 i 재화의 수입수요곡선이고, 직선 $ISI'S'$ 은 i 재화의 수입공급곡선이며, 그 공급가격은 P 라고 하자. 그 외 재화간의 대체탄력성 및 관세인하가 관세인하대상국이외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조건들도 일정하다(*ceteris paribus*)고 가정하자.

K 국이 세계공급가격인 P 에서 i 재화의 수입에 대해 t_1 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 K 국의 i 재화수입가격은 ' $P(1+t_1)$ '이 될 것이며, i 재화수입량은 $0Q_1$ 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i 재화수입에 따른 K 국의 후생수준은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인 ' ΔP_1IDA '의 면적과 정부의 관세수입액인 ' ΔP_2P1ab '의 면적의 합계로 표현된다. 이 과정에서 관세협상을 통해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관세인하율을 γ 라고 하고, 인하 후 관세율을 t_2 이라고 하면, K 국의 i 재화수입가격은 협상전보다 ' $\gamma \cdot t_1 \cdot P$ '만큼 하락하여 ' $P(1+t_2)$ '가 될 것이며, i 재화수입량은 협상전보다 ' Q_1Q_2 '만큼 증가하여 $0Q_2$ 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i 재화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η_i 라고 하면, 관세인하에 의한 i 재화의 수입량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ta_i = \frac{\Delta Q_i}{Q_i} \bigg/ \frac{\Delta P_i}{P_i} = \frac{Q_1Q_2}{0Q_1} \cdot \frac{0P_1}{P_1P_2} = \frac{Q_1Q_2}{0Q_1} \cdot \frac{1+t_1}{\gamma t_1} \quad (1)$$

$$\left(\therefore \frac{Q_1Q_2}{0Q_1} = \eta_i \cdot \frac{1+t_1}{\gamma t_1} \right)$$

또한, 관세인하가 K 국에 미치는 수입증가효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Delta IM_{ij} = IM_{ij} \cdot \frac{\gamma \cdot t_{ij}^{mr}}{1+t_{ij}^{mr}} \cdot \eta_i$$

위 공식에서 각 기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IM_{ij} : K 국이 j 국가로부터 수입한 i 품목의 수입액

t_{ij}^{mr} : K 국이 j 국가에서 수입한 i 품목의 수입관세율

η_i : K 국의 i 품목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γ : 관세인하율

2) 분석자료

GSTP협상의 효과분석은 크게 한국의 수입증가량분석 및 수출증가량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본 분석에서는 GSTP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량이 적은 관계로 한국의 수입증가효과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분석에는 관련품목과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품목을 선정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GSTP 협상대상국과 관련된 품목별·국별 수입량과 금액, 국민소득 및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등이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무

역협회의 무역통계연보(<http://fs.fips.go.kr/main.jsp>)³⁾와 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수출입정보시스템 (<http://trade.suhyup.co.kr/>)에서 제공하는 HS코드별 수산물 수출입통계자료, 어업생산통계시스템(<http://fs.fips.go.kr/main.jsp>), 산업연구원의 주요산업동향지표(<http://www.kiet.re.kr/kiet/report/indutrend.jsp>)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수산관련 품목별·국별 수입량과 금액은 월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출입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2004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각국의 품목별 관세율은 한국이 각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원명을 찾아서 그 품목에 해당하는 각국의 품목분류번호를 찾아 양자의 상품분류번호를 일치시킨 후 품목별로 각국의 대한국관세율을 조사하였다.

2. 관세감축률 시나리오별 분석

관세인하와 관련된 근래의 이슈들은 WTO/DDA NAMA 협상과 기 체결된 FTA양허스케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WTO/DDA NAMA 협상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에 별도의 계수를 부여하는 스위스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되 선진국은 계수 8~9, 개도국은 계수 19~23으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선진국은 8~9% 이하 수준으로, 개도국은 19~23% 이하 수준으로 관세가 하향조정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한국과 이미 체결된 FTA 양허스케줄을 보면 칠레의 경우 모든 수산 품목을 양허하였고, 41개 품목을 10년 양허하였다. 싱가포르 경우에는 칠레와는 달리 178개 품목을 양허제외 하였고, 37개 품목에 대해 10년 양허하였다. 비록 싱가포르의 수산업이 미미하나 주변 수산국가들로부터의 우회 수입 방지 그리고 한-아세안 FTA 협상을 고려한 양허스케줄이 작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EFTA의 경우에는 양허제외 품목은 47개이나, 재검토, 관세 감축, 세번 분리, 10년 양허 등을 통하여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양허율은 90.4%로 기존 FTA 보다 높으나, 5% 관세상한, 20% 감세 감축 등을 통하여 민감성을 확보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100% 양허하였으나, 152개 품목은 10년 이상 양허한 실정이다.

기존의 관세인하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GSTP관련국들의 시장접근협상에서는 관세 감축방식으로 선형 감축방식(across-the-board)³⁾과 계수 100의 스위스 공식(말레이시아 제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UNCTAD 총회시 개최된 GSTP 각료회의에서 말레이시아가 스위스 공식을 포기함에 따라 선형감축방식(across-the-board linear cut)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관세감축률(margin of preference, MOP) 수준은 20~40% 범위(UNCTAD 총회 GSTP 각료회의 합의사항)에서 주로 20~30%

3) 선형감축(Across-the-board)이란 품목범위에 대해 [z]%의 MOP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후, 보다 높은 시장 개방 분야 및 민감품목에 대한 [z]%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양자협상을 개최하는 방법을 말한다.

범위가 논의되고 있다. 민감품목범위는 GSTP 특혜관세 적용대상품목 최소범위를 70%로 정함에 따라, 무세화품목 제외한 품목(dutiable tariff line)의 30% 범위 내에서 향후 협상을 통해 민감품목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GSTP 협상의 경우, 참가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국가들 간의 교역증대를 도모하게 되는 데, 이 때 관세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하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관세인하와 관련해서는 일괄인하방식, 품목별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데 후자인 품목별방식은 실제로 각국이 협상과정에서 관세인하협상을 벌이게 되므로 관세인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는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된 후에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세인하방식 중 일괄인하방식을 그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인하공식으로는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관세감축률(margin of preference, MOP)별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표 9> 관세감축률별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I	기본 MOP 50% 인하 : MERCOSUR안
II	MOP 20% 인하
III	MOP 30% 인하

각 시나리오는 현재 GSTP 협상대상국가간 논의되고 있는 예상 관세 감축률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나리오 I은 기본 MOP 50% 수준의 MOP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둘째, 시나리오 II는 관세감축률 MOP 20%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셋째, 시나리오 III은 관세감축률 MOP 30%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V. 실증분석결과

1. 수입증가량분석

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입수요 가격탄력성 분석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Verdoon and Schwarz, 1976).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일정기간동안에 어떤 수입품목의 수입량의 변화가 그 수입가격의 변화에 반응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P_i 와 Q_i 를 각각 수입품목의 가격 및 수입량이라고 하면,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Henderson, 1980).

범개도국간特惠무역제도 관세협상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의 수입증가효과분석

$$\eta_i = \frac{\Delta Q_i}{Q_i} \bigg/ \frac{\Delta P_i}{P_i} \quad (3)$$

위 식을 미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ta_i = \frac{dQ_i}{Q_i} \bigg/ \frac{dP_i}{P_i} = \frac{d \log Q_i}{d \log P_i} \quad (4)$$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수요함수(수입량, Q)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본적으로 수입가격수준(P_m), 국내가격수준(P_d), 국민소득(I)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화폐환상(money illusion)⁴⁾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함수형태와 log-선형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Stern, 1976).

$$\begin{aligned} Q &= f(P_m, P_d, I) \\ Q &= f(P_m/P_d, I/P_d) \\ Q &= a \left(\frac{P_m}{P_d} \right) \left(\frac{I}{P_d} \right) \\ \log Q &= \log a + b \log \left(\frac{P_m}{P_d} \right) + c \log \left(\frac{I}{P_d} \right) + \log \mu \end{aligned} \quad (5)$$

한국의 수입수요함수는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위 식의 모수(parameter)를 추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a 는 상수, b 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c 는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 μ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GSTP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한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은 수입수요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log Q_{it} = \beta_0 + \beta_1 \log P_{it} + \beta_2 \log I_t + \log \mu_{it} \quad (6)$$

위식에서 Q_{it} 는 t 기의 i 품목에 대한 수입량, P_{it} 는 t 기의 i 품목에 대한 수입단가, I_t 는 t 기의 국민소득, μ 는 오차항을 각각 나타낸다. 위 수입수요함수모형에서 β_1 이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며, β_2 는 소득탄력성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을 품목별로 적용하면 품목별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들을 분석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GSTP 참가국들로부터 수입되는 다양한 품목 중 이용가능한 자료

4) 화폐는 불변의 구매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화폐의 실질적 가치의 증감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폐착각 또는 화폐적 착각이라고도 한다.

〈표 10〉 GSTP 수입 품목별 분석결과

HS코드	품목명	가격탄력성 (α_1)	소득탄력성 (α_2)	결정계수 (R^2)
0306131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 0.6867	1.4844	0.41
		(- 1.7782)	(3.3459)	
0303793000	갈치(냉동)	- 3.0873	- 2.7441	0.36
		(- 4.2209)	(- 2.1051)	
0303794090	기타돔(냉동)	- 0.8253	- 2.7466	0.25
		(- 2.5459)	(- 2.0406)	
0307491020	오징어(냉동)	- 1.0084	5.1617	0.43
		(- 3.6253)	(4.3271)	
0306143000	꽃게(냉동)	- 0.4743	0.6703	0.76
		(- 8.2241)	(0.8659)	

의 존재와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수입어종에 해당되는 5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표 10〉).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갈치(냉동)가 가장 큰 가격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징어(냉동), 기타돔(냉동),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꽃게(냉동) 순으로 가격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2.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결과

〈표 9〉에서 제시한 3가지 관세감축률(margin of preference, MOP)에 따른 주요 품목별 관세 변화율을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것이 〈표 11〉이며, 구체적으로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오징어(냉동)의 관세율이 가장 높은 관계로 관세감축률 변화에 따른 변동폭도 크게 나타났다.

관세감축률에 따른 관련 품목에 대한 한국의 과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증가량을 도출하여야 한다. 관세감축률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가중평균 수입량, 관세감축시나리오 등이 필요하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표 10〉의 결과를 이용하고, 수입량은 2004년

〈표 11〉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변화율(%)

HS코드	품목명	현행 관세율	기본 MOP 50%인하	MOP 20%인하	MOP 30%인하
0306131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20.0	17.0	16.0	14.0
0303793000	갈치(냉동)	10.0	8.5	8.0	7.0
0303794090	기타돔(냉동)	10.0	8.5	8.0	7.0
0307491020	오징어(냉동)	22.0	18.7	17.6	15.4
0306143000	꽃게(냉동)	14.0	11.9	11.2	9.8

1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의 가중평균 수입량을 적용하며, 관세감축시나리오는 < 표 9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세감축률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 수산업의 수입증가효과에 대해 정리하면 < 표 12 > ~ < 표 14 >와 같다.

분석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수입증가액이 가장 큰 것은 시나리오별로 공통적으로 꽃게(냉동), 기타돔(냉동), 갈치(냉동),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오징어(냉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증가율로는 갈치(냉동)이 가장 높았으며, 오징어(냉동),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기타돔(냉동), 꽃게(냉동)순으로 분석되었다.

GSTP 협상대상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은 주로 냉동어류의 형태로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연근해어업과 경쟁관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취약한 형편이고, 영세경영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입품목들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감축은 해당 어종의 어획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표 12 > 시나리오 I(기본 MOP 50%인하)

HS코드	품목명	가격 탄력성	수입증가량 (톤)	수입증가액 (천원)	수입증가율 (%)
0306131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6867	69.8	494,779	2.0
0303793000	갈치(냉동)	-3.0873	899.4	1,248,971	4.6
0303794090	기타돔(냉동)	-0.8253	5,919.5	11,816,225	1.2
0307491020	오징어(냉동)	-1.0084	117.9	177,576	3.2
0306143000	꽃게(냉동)	-0.4743	33,538.9	74,020,072	1.0

< 표 13 > 시나리오 II(MOP 20%인하)

HS코드	품목명	가격 탄력성	수입증가량 (톤)	수입증가액 (천원)	수입증가율 (%)
0306131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6867	92.3	654,604	2.6
0303793000	갈치(냉동)	-3.0873	1,191.1	1,654,043	6.1
0303794090	기타돔(냉동)	-0.8253	7,839.3	15,648,514	1.6
0307491020	오징어(냉동)	-1.0084	155.6	234,356	4.2
0306143000	꽃게(냉동)	-0.4743	44,284.4	97,735,240	1.5

< 표 14 > 시나리오 III(MOP 30%인하)

HS코드	품목명	가격 탄력성	수입증가량 (톤)	수입증가액 (천원)	수입증가율 (%)
0306131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6867	135.7	962,353	3.9
0303793000	갈치(냉동)	-3.0873	1,768.3	2,455,747	9.0
0303794090	기타돔(냉동)	-0.8253	11,638.9	23,233,252	2.4
0307491020	오징어(냉동)	-1.0084	228.7	344,576	6.2
0306143000	꽃게(냉동)	-0.4743	65,612.5	144,806,257	2.3

IV. 결론 및 정책함의

한국은 WTO와 FTA와 같은 다변화하는 글로벌 현실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GSTP 국가 간의 협상은 참가국간의 개방과 무역촉진을 통하여 상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GSTP 참가국의 수산물 수입실적은 전체 수입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40%) 다음으로 위협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한국과 GSTP 상대국들 간의 상호 수산물 수출입량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협상결과는 각 대상국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입증가액과 수입증가율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시나리오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에 따른 파급효과 우선순위대상을 선정하고 단계적 지원과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냉동의 형태로 많이 수입되지만 향후 기술과 수송의 개발과 발전이 뒷받침된다면 신선, 냉장, 활어의 형태로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관세양허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수입수산물의 수입형태를 단일품목이외에 어종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분석한 오징어(냉동)의 경우처럼 오징어와 관련하여 수입되는 품목들로는 갑오징어와 오징어(건조), 냉동 갑오징어, 조미오징어, 갑오징어와 오징어(염장, 염수장), 오징어(밀폐용기/조제, 저장) 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어종이라도 다양한 품목으로 수입되므로 그 규모를 감안하면 큰 파급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우선순위 중 상당수의 어종들이 GSTP 참가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과 유사하므로 협상과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현재 체결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의 FTA 협상 체결 대상국들 중에는 37개 GSTP 참가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8개 국가(칠레,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나 된다. 특히 아세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액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한국과 GSTP 협상에서는 아세안과의 FTA를 감안하여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과 태국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되 양국 모두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수산물 관세율이 높아 전면적인 관세 인하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므로 한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적절한 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행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으로 대표되는 MERCOSUR와 인도 등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다면 협상과정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전략적 관세양허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정

책대안을 위해서는 관세감축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증가가 한국의 관련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생산어종의 수입변화를 통하여 분석해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었다.

최종두

참고문헌

- 무역협회, 무역통계연보, <http://fs.fips.go.kr/main.jsp>
-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 <http://www.kiet.re.kr/kiet/report/indutrend.jsp>
-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수출입정보시스템, <http://trade.suhyup.co.kr/>
- 수산업협동조합, 어업생산통계시스템, <http://fs.fips.go.kr/main.jsp>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GSTP** 알기, 외교통상부, 2006, p.205.
- 이상민 외, 수산물 시장접근 협상대응 수산물 민감도분석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3, p. 224.
- 황기형 외, 한 - 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2005, p.197.
- Anderson, J. L., *The International Seafood Trade*, Woodhead Publishing Ltd., 2003, p. 240.
- Henderson, J. M. and R. E. Quandt, *Microeconomic Theory*, McGraw - Hill Book Company, 1980, p. 408.
- Stern, R. M., Jonathan Francis and Bruce Schumacher, *Prices Elasticities in International Trade*, The Macmillan Press, 1976, p. 363.
- Verdoon, P. J. and A.N. Schwarz, "Two Alternative Estimates of the Effects of EEC and EFTA on the Pattern of Trade",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 1976, pp. 291 - 335.
- William Cline, *Trade Negotiations in the Tokyo Round ; A Quantitative Assessment*,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8, pp. 129 - 239.

The Effect of Import Increase for Korea's Fishery by Korea – GSTP Ground

Choi, Jong – Du

Abstract

The worldwid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bined with rising interests of 37 countries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 possible GSTP between each country. Although there are many obstacles to GSTP, its effect, if realized, will go beyond trade related issues. This study was to specify and estimate a model of Korea – GSTP Ground in Korea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and improve management decisions. The development of the model relied on several submodels. On the trade negotiation side, a import demand function was estimated in order to account for the increasing amount of import. In terms of margin of preference(MOP)s, they were used to estimate values after decreasing tax based on scenarios I, II, and III.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st effects for increasing value and amount of import are a freezing crab(HS code 0306143000) and freezing hairtail(HS code 0303793000). This paper will be provide to help policy makers understand the Korea – GSTP Ground in the Korea fishery.

key words : GSTP, Trade negotiation, Import demand function, MOP